조심조심 코리아

-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신설 · 이전 할 때
- 특정한 설비 및 장치를 신설 · 이전 할 때
-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할 때에는

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를
작성 · 제출하여
심사 ·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!

고용노동부
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

「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」란?

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 · 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
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
건설물 · 기계 · 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· 이전하거나
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작성하여
사전 안전성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
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서
산업재해를 예방하고 **근로자 안전보건의**
유지 ·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.

관련근거

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48조

- 미제출 등 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
제출자 및 제출 시기 · 서류 · 방법

01+

누가 제출해야 하나요?

-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

어떻게 작성 하나요?

-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

※고용노동부고시 제2014-39호(2014. 10.29) 참조

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.kosha.or.kr → 사업안내 → 산업안전 → 제조업 등 유해 · 위험방지 계획서 심사확인 → 자료실에서 다운가능

*제공 자료 : 관련 법령(고시), 신청서 및 제출 서식, 작성 모델

제출시기(작업 시작 15일 전까지)

-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 · 기계 ·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·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,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. 다만 기존공장, 임대공장,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

제출서류제출방법

- 신청양식 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」별지 제25호 서식
-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 2부(1부는 가급적 전자문서로 제출)

제출방법

- 제출처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· 지사
- 심사수수료 납부 : 계획서 제출 후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

수수료(고용노동부고시 제2014-40호)

종 류	규 모	수수료(원)
13대업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 · 이전하는 경우	가. 전기계약용량이 500kW 미만 나. 전기계약용량이 2,000kW 미만 다. 전기계약용량이 2,000kW 이상	84,000 123,000 183,000
13대업종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 · 이전 · 변경하는 경우	–	67,000
5개 설비를 설치 · 이전하는 경우	가. 3기 미만 나. 6기 미만 다. 6기 이상	44,000 58,000 67,000
5개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	–	36,000

제출대상

02+

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?

대상 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

*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

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(9차, 2007년)의 13대 업종으로써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· 기계 ·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· 이전 또는 전기정격용량의 합 100kW이상 증설 · 교체 · 개조 · 이설하는 경우(업종은 공장등록증 확인)

업종코드	표준산업분류(중분류)	업종코드	표준산업분류(중분류)
10***	식료품 제조업	261**	반도체제조업
16***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	262**	전자부품 제조업
20***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29***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22***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30***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23***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32***	가구 제조업
24***	1차 금속 제조업	33***	기타 제품 제조업
25***	금속가공제품 제조업: 기계 및 가구 제외		

*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['09.2.1 이후 적용]
*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, 반도체 제조업, 전자부품 제조업 ['14.9.13 이후 적용]
* 상기 외 8개 업종 [2012.7.1이후 적용]

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 · 이전 · 변경하는 경우

용해로(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)

-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(爐)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

화학설비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273조에 따른 "특수화학설비"로 단위 공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인 것

특수화학설비란?

①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
② 증류 · 정류 · 증발 ·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
③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
④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
⑤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
⑥ 가열로 또는 가열기

건조설비

-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
  -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
  - 도료,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
  -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

가스집합용접장치

- 용접 · 용단용으로 1개이상의 가스저장용기 또는 탱크를 연결한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토치까지의 일관설비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

허가 ·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

-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·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· 제거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(배풍량이 60㎥/분 이상)
-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·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·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(배풍량이 150㎥/분 이상)

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(49종)

- 디아니시딘과 그 염
-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
- 베릴륨
- 벤조트리클로리드
-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
- 석면
- 알파-나프틸아민과 그 염
- 염화비닐
- 오로토-톨리딘과 그 염
- 크롬광
- 크롬산 아연
- 황화니켈
- 휘발성 콜타르피치
- 2-브로모프로판
- 6가크롬 화합물
- 납 및 그 무기화합물
- 노말헥산
- 니켈(불용성 무기화합물)
- 디메틸포름아미드
- 벤젠
- 이황화탄소
- 카드뮴 및 그 화합물
- 톨루엔-2,4-디이소시아네이트
- 트리클로로 에틸렌
- 포름알데히드
- 메틸클로로포름 (1,1,1-트리클로로에탄)
- 곡물분진
- 망간
-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(MDI)
- 무수프탈산
- 브롬화메틸
- 수은
- 스티렌
- 시클로헥사논
- 아닐린
- 아세토니트릴
- 아연(산화아연)
- 아크릴로 니트릴
- 아크릴아미드
- 알루미늄
- 디클로로메탄(염화메틸렌)
- 용접흄
- 유리규산
- 코발트
- 크롬
- 탈크(활석)
- 톨루엔
- 황산알루미늄
- 황화수소

- 허가대상물질의 종류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
-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: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12]
- 분진작업의 종류 :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16]

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서류

03+

대상업종

- 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)
- 사업의 개요
-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
- 기계 · 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
- 기계 · 설비의 배치도면
-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,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
- 공정배관 · 계장도(Piping & Instrument Diagram, P&ID)
  ※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함
- 설비 및 기계 목록(별지 제4호서식)
- 유해 · 위험물질 목록(별지 제5호서식)
- 방폭전기/계장 기계 · 기구 선정기준(별지 제6호서식)
- 환기장치 개요(별지 제7호서식)
-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(별지 제8호서식)
-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(전기보호장치 포함)
  ※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 단선도는 제출 생략 가능
- 폭발위험장소 구분도
- 유해 · 위험요인 평가서 또는 위험성 평가 결과서
- 화재 · 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
  ※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 · 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에 한함

대상설비

- 공통서류
  - 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)
  - 사업의 개요
  -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(Process Flow Diagram, PFD)
- 용해로
  -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
  -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
  -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
  - 용해로의 사양서
    ※ 종류, 형식, 능력, 제조자 및 제조연월, 가열방법(열원의 종류), 표준(최대) 투입량, 온도 · 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
  -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
  - 용융물 누출, 수증기 폭발 등 비상시 제어절차 및 대책
- 화학설비
  - 주요 부속설비(소화설비 포함)의 구조 및 배치도면
  - 해당 화학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경보설비,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
  - 공정배관 · 계장도(Piping & Instrument Diagram, P&ID)
  - 유해 · 위험물질 목록(별지 제5호서식)
  -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
  -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(별지 제8호서식)
  - 장치 및 설비명세(별지 제10호서식)
  - 화재 · 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
- 건조설비
  - 주요 부속설비(소화설비 포함)의 구조 및 배치도면
  - 해당 건조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
  -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 서식
  - 건조설비의 사양서
    ※ 종류, 형식, 능력, 제조자 및 제조연월, 가열방법(열원의 종류), 표준(최대) 투입량, 온도 · 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
  - 건조물의 종류와 특성
  - 환기장치, 온도측정장치 및 조절장치,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, 재질 및 성능
  - 전기설비 및 정전기 제거용 접지 관련 도면
- 가스집합 용접장치
  - 주요 부속설비(소화설비, 경보설비 및 안전기 등 방호장치를 포함)의 구조 및 배치도면
  - 해당 가스장치실(저장설비) 및 주요 부속설비(소화설비를 포함)에 설치하는 안전기 등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
  -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
  -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능력, 제조자 및 제조연월
  - 안전기의 종류, 형식, 제조자, 제조연월, 수량, 구조 및 재질
  -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, 재질 및 성능
- 허가대상 ·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
  - 해당 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
  - 유해 · 위험물질 목록(별지 제5호서식)
  -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
  - 국소배기장치 개요(별지 제7호서식)
  - 해당 설비의 종류, 형식, 능력, 제조자 및 제조연월
  -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, 재질 및 성능

※ 신청서 이외 서류는 2부를 제출하여야 함
※ 별지 각호 서식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-39호(2014.10.29) 참조

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절차

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

04+

일선기관명	관할구역	전화번호
서울지역본부	서울특별시 강남구, 서초구,성동구, 광진구, 송파구, 강동구, 영등포구, 강서구, 양천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	02-6711-2842
서울북부지사	서울특별시 중구, 종로구, 성북구, 용산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은평구, 동대문구, 도봉구, 강북구, 중랑구, 노원구	02-3783-8318
강원지사	강원도, 경기도 가평군(철원군 제외)	033-815-1042
강원동부지사	강릉시, 속초시, 동해시, 삼척시, 태백시, 고성군, 양양군, 영월군, 평창군, 정선군	033-820-2511
부산지역본부	부산광역시	051-520-0528
울산지사	울산광역시	052-226-0524
경남지사	경상남도(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 제외)	055-269-0559
경남동부지사	경상남도 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	055-371-7522
광주지역본부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 (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고흥군, 보성군 제외)	062-949-8746
전북지사	전라북도 전주시, 남원시, 정읍시, 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, 완주군, 진안군, 무주군	063-240-8532
전북서부지사	전라북도 익산시, 김제시, 군산시, 부안군, 고창군	063-460-3624
전남동부지사	전라남도 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고흥군, 보성군	061-689-4954
전남지사	목포시 무안군, 영암군, 강진군, 완도군, 진도군, 해남군, 장흥군	061-288-8702
제주지사	제주특별자치도	064-797-7504
중부지역본부	인천광역시	032-510-0511
경기지사	경기도 수원시, 평택시, 오산시, 용인시, 안성시, 화성시	031-259-7125
경기북부지사	경기도 의정부시, 동두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고양시, 파주시, 양주시, 포천시, 연천군, 강원도 철원군	031-828-1918
경기서부지사	경기도 광명시, 안양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안산시, 시흥시	031-481-7512
경기동부지사	경기도 성남시, 하남시, 이천시, 광주시, 양평군, 여주군	031-785-3321
부천지사	경기도 부천시, 김포시	032-680-6547
대구지역본부	대구광역시 중구, 동구, 북구, 수성구, 경상북도 영천시, 경산시, 청도군, 군위군	053-609-0522
대구서부지사	대구광역시 서구, 남구, 달서구, 달성군, 경상북도 고령군, 군위군, 성주군, 칠곡군 (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)	053-650-6834
경북동부지사	경상북도 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 울진군, 울릉군	054-271-2034
경북지사	경상북도 구미시, 김천시, 영주시, 상주시, 문경시, 봉화군, 안동시, 예천군, 의성군, 영양군, 청송군,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	054-478-8014
대전지역본부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 공주시, 논산시, 보령시, 계룡시, 서산시, 금산군, 부여군, 서천군, 청양군, 태안군, 홍성군	042-620-5612
충북지사	충청북도	043-230-7152
충남지사	충청남도 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예산군	041-570-3425

※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면 과태료(1,000만원 이하)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